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38-190011-1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2019.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일/러/두/기

- * 이 사례집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발간 이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이 사례집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안내센터 1390번으로 문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용어의 표기
 -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예비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 ... 「**선거법**」 또는 「**법**」으로 표기
 - 「**공직선거관리규칙**」 ... 「**규칙**」으로 표기
 - 「**제58조 제1항**」 ... 「**제58조 제1항**」 또는 「**§58①**」로 표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로 표기

C·O·N·T·E·N·T·S

선거운동 개관

제1장

| | |
|----------------------------|----|
| 1. 선거운동의 정의 | 10 |
| 2. 선거운동기간 | 13 |
|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15 |
| 참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17 |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제2장

| | |
|-----------------------|----|
| 1. 문자메시지 발송 | 20 |
| 2.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이용 | 23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3장

| | |
|------------------------|----|
|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 28 |
| 2. 명함 배부 | 32 |
| 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35 |
| 4. 어깨띠 및 표지를 이용 | 37 |
| 5. 전화 이용 | 39 |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제4장

| | |
|--------------------------|----|
|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 42 |
| 2.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 45 |
| 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 48 |
| 4. 출판기념회 개최 | 50 |
|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 보도 | 53 |
| 6. 호별방문 및 서명 · 날인운동 | 58 |
| 7. 의정활동 보고 | 61 |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제5장

| | |
|-----------------------------------|----|
| 1. 명함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68 |
| 2. 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 | 73 |
| 3. 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 75 |
| 4. 공개장소 연설 · 대담 | 77 |
| 5. 전화 · 인터넷광고 | 80 |
| 6.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 82 |
| 7.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 84 |
| 8. 투표참여 권유활동 | 87 |
| [참고1] 국회의원선거(지역구 · 비례대표)의 선거운동 방법 | 89 |
| [참고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 90 |
| [참고3]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91 |

선거법상 제한 · 금지사례

제6장

| | |
|-------------------------------|-----|
| 제1절 금품 · 음식물 기부행위 등 | 94 |
|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 94 |
| 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 95 |
| 3.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 수령 금지 | 107 |
| 4.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 | 108 |
| 제2절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 110 |
|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 110 |
|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111 |
|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 115 |

C·O·N·T·E·N·T·S

| | |
|---------------------------------|-----|
| 제3절 단체의 선거운동 등 | 118 |
| 1. 단체의 선거운동 | 118 |
| 2. 낙천 · 낙선운동 | 123 |
| 3.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 124 |
| 4.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 127 |
| 제4절 당내경선 및 정당활동 | 131 |
| 1.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 | 131 |
| 2.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원협의회 | 133 |
| 3. 통상적인 정당활동 | 134 |
| 4. 당원집회 | 136 |
| 5.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 | 139 |

「정치자금법」상 제한 · 금지사례

제7장

| | |
|------------------------------|-----|
|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 146 |
| 2.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정치자금 | 150 |
| 3. 법인 · 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 153 |
| 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 155 |
| 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 156 |
| 6. 정치자금 회계 | 157 |

부록

| | |
|----------------------------------|-----|
|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 162 |
| 2. 시기별 주요 제한 · 금지사항 | 163 |
| 3. 금품 ·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67 |
| 4.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 169 |
| 5. 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 · 면제 | 171 |
|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172 |

찾아
보기

178





제1장

선거운동 개관

1. 선거운동의 정의
2. 선거운동기간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참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1. 선거운동의 정의

법규요약

법 §58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Tip****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거나, 주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의 동정란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가정집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에서 단순히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구두(별도 인쇄물 배부 등은 불가)로 소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행위
 -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8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동창회·동호회 등 개인들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연말연시 인사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내용 포함)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위반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 제외)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거나 열차시간표, 무형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을 부수적으로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후원회가 후원금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장에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후원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자 및 관계자들과 노인복지에 관한 의견 등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
 -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 법회 · 강론 · 설교 등 종교집회를 주관 ·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인 소속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동정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지지 · 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 체육대회의 명칭이나 우승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을 표기하는 행위

2. 선거운동기간

법규요약

법 §59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0. 4. 2. ~ 4. 14.)를 말함.
- 예 외
 - 예비후보자 등이 법 제6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 2019. 12. 17.(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문자 ·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 ·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사전선거운동죄 성립과 입후보 의사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입후보의 신청 전에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 법칙조항 : §254②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가 약을 사러 갔다가 약사로부터 그의 남편이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의 처로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8 판결)

-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기자회견 · 당원집회 등 선거법에서 제한 · 금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타당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봉사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행위(부산고법 2014. 10. 22. 선고 2014노475 판결)
-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대구고법 1992. 10. 14. 선고 92노533 판결)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법규요약

법 §58, §60

-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 ③ 선거권이 없는 자
 -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⑤ 각급 선관위 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신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과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로 위헌(현재 2016. 6. 30. 2013헌가1 결정)
 - 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지방분권법」 제27조 · 제2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 및 그 위원은 선거법 상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
 -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 ⑨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다만,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부터 ⑧까지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020. 1. 1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법칙조항 : §255①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반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활동(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 행위 등)을 하는 행위
-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 주세요”라는 등 수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한 행위(창원지법 1996. 5. 9. 선고 95고합415 판결)
-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라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행위(서울고법 2004. 10. 19. 선고 2004노1844 판결)

참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할 수 있는 사례

- 기관 · 단체 · 시설이나 민생현장에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민원과 관련한 소속정당의 정책이나 자신의 견해 · 정책적 대안을 단순히 밝히는 행위
- 시장, 산업현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통상적인 체험활동을 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행위
-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 · 단체 · 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
- 지역의 환경문제 등의 현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
- 단체가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강연주제를 선정하고 초청을 받은 입후보예정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강연을 하는 행위
-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는 경우는 위반

명언

✖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의 강연회에 초청받아 지지호소 · 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기표소

제2장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1. 문자메시지 발송
2.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이용

1. 문자메시지 발송



법규요약

법 §59, §82의5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단체
- 기 간 : 언제든지
-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전송할 수 없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회를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 ○○국회의원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 1541(또는 080서비스번호 등) +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유의사항(아래 23페이지의 ‘2.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도 같음.)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누구든지 숫자 ·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각급선관위(읍 · 면 · 동선관위 제외)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 ·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 · 정지 ·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벌칙조항 : §255④, §256③, §261③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 · 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 ·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예비)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 · 명칭 · 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 전송하는 행위
- 법 제135조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 다만 휴대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의 주소록에서 20인 이하의 그룹을 미리 설정하여 그룹별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것은 프로그램 이용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이용

법규요약

법 §59, §82의4, §82의5

1. 인터넷 홈페이지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단체
- 기간 : 언제든지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방법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전자우편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단체
 -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기간 : 언제든지
- 전송횟수 : 제한 없음
-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상기 20페이지의 '1. 문자메시지 발송'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유의사항 참조

[예시] 선거운동정보, ○○국회의원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E-mail 주소 등)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법적조항 : §255④, §256③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한 일반유권자와의 대담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 및 미니홈피 등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 다만,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82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비방하는 행위

- ▣ 누구든지 숫자 ·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 전자우편(E-Mail)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 비정규학력 기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2. 명함 배부
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4.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5. 전화 이용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 법규요약

법 §60의3①, §61, §63①, §112②

1. 선거사무소 설치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 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 다만, 식품점객영업소 ·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 · 변경한 때에는 자체 없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함.

2.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 · 현판 · 현수막 설치 · 게시

- 수량 · 규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 · 게시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불가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 · 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있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3. 선거사무소 개소식

-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 간판게시식 · 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 · 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벌칙조항 : §255①, §256⑤, §261⑧

사례 예시

가. 선거사무소 설치

할 수 있는 사례

- 천막 · 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여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한 행위(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675 판결)
-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한 행위(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판결)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는 행위

나.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 · 현판 · 현수막 설치 · 게시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현 · 당규에 따라 정당주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는 행위
- 다른 법률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 다만, 해당 간판이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실제 함께 활동하였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인 경우 게재할 수 없음.
-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 · 가족 · 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제한된 범위의 초청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 전화 ·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개소식을 알리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반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 ·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 · 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초청을 받은 내빈(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 ·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서울고법 2013. 3. 8. 선고 2013노302 판결)
→ 예비후보자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명함배부 등 법 제60조의3에 따라 가능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확성장치 사용 등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

-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조청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03 판결)

2. 명함 배부



법규요약

법 §60의3

1. 작성방법

- 명함규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지질 · 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 제작 가능
 - 명함은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
-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 · 사진 · 전화번호 · 학력 ·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2.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3.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및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않음.
- 선박 · 정기여객자동차 · 열차 · 전동차 ·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 역 ·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 종교시설 · 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금지
 -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법칙조항 : §255②

사례 예시

❶ 할 수 있는 사례

-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되는 재질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
 - 다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는 없음.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 성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 다만,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관공서 등의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반
-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할머니·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정규학력(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포함) 이외의 유사학력을 게재·배부하는 행위(예비후보자홍보물에서도 같음.)
- 후보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역 개찰구 안 등 명함배부금지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서울서부지법 2006. 8. 24. 선고 2006고합189 판결)
-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인천지법 2012. 7. 13. 선고 2012고합622 판결)

- ▣ 사찰의 부속건물인 해탈문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 2979 판결)

※ 해탈문 : 사찰의 정문에 해당되며, 정면계단을 올라가서 기둥 주변의 난간 안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종교시설의 내부에 진입하는 것임.

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법규요약

법 §60의3① 제4호

1. 작성방법

- 종 수 : 1종
- 수 량 :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규격 및 면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
- 게재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2. 발송방법

- 기 간 :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2020. 3. 30.)
- 횟 수 : 제한 없음
 - ➔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수회 발송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 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음.
- 방 법 :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따른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금별납 방법으로 우편발송

☞ 법칙조항 : §255②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법에서 정해진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등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대표자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서류를 함께 열람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 지역방송 · 신문사, 시민단체, 미용실 · 공인중개사무실, 기타 상가 등에 발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이 지지 · 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
→ 그 밖의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정당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외에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는 행위
- 우편 수취함에 꽂혀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거하여 휴지통과 재활용처리장에 버린 행위(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고합208 판결)

4.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법규요약

법 §60의3① 제5호

● 주 체 : 예비후보자

● 규격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표지물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게재사항 : 기호 · 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법칙조항 : §256③, §254①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 선거법상 각종 제한 ·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그 업소의 소유 ·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예비후보자가 아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아니한 특이한 복장(요리사, 의사, 산타복장 등)을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와 수행원이 모두 동일한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 LED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나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 · 사용하는 행위
 - 다만,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위반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 다만, 자전거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울산지법 2012. 8. 14. 선고 2012고합224 판결)
→ 다만,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무방
- 예비후보자가 표지물(피켓)을 노상의 보행자 보호설치대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3. 31. 선고 2015도159 판결)

5. 전화 이용

법규요약

법 §60의3① 제6호, §109②

- 주 체 : 예비후보자
-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 ·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법칙조항 : §254①

사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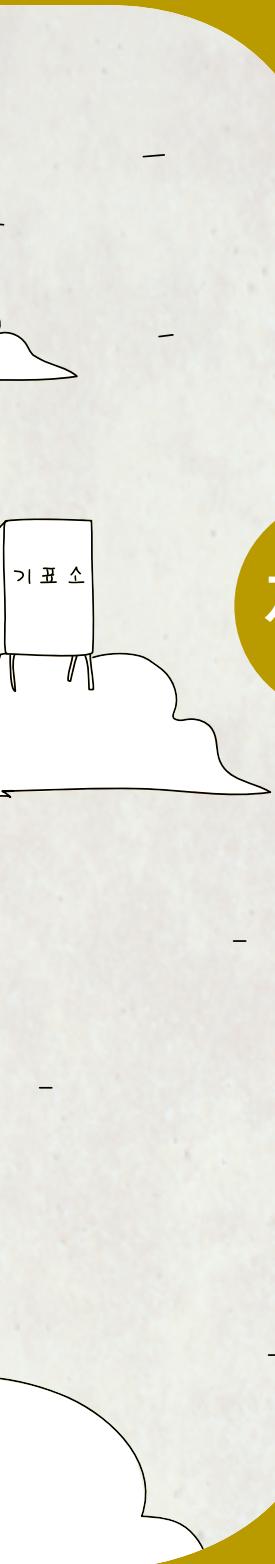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예비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제4장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2.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4. 출판기념회 개최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 보도
6. 호별방문 및 서명 · 날인운동
7. 의정활동 보고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법규요약

법 §90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9. 10. 18. ~ 2020. 4. 15.)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 풍선 · 간판 · 현수막 · 애드벌룬 ·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 행위
 -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촉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 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 · 판매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을 등을 설치 · 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법칙조항 : §256③

사례 예시

❶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 · 전화번호 · 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폄기 위하여 정강 · 정책 설명회 · 토론회 · 강연회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협판 ·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 · 문화 · 체육 · 예술 · 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민속절 · 국경일 또는 사무소의 개소 · 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 · 기관 · 단체 · 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 · 성명(사진포함)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사진 게재는 법 제86조 제7항에 위반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❷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 거리에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지지 · 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 정당이 회사를 통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당의 마크 ·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 상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행위
- ▣ 정당이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정당의 명칭 · 로고 · 홈페이지 주소 등이 표시된 기념품(에코백, 우산, 티셔츠)을 구입한 당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무인비행장치(일명 드론, Drone)에 자신의 기호 · 성명 · 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날리는 행위
- ▣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 법규요약

법 §93①, §95①

1.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배부

- ◉ 주 체 : 누구든지
-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9. 10. 18. ~ 2020. 4. 15.)
-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첨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 허용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선거에 관한 기사 배부

- ◉ 주 체 : 누구든지
- ◉ 금지기간 : 상시
- ◉ 금지행위 :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 통신 · 잡지 또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 살포 · 게시 · 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 살포 · 게시 · 첨부하는 행위

☞ 별첨조항 : §252③, §255②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 (그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 포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 안의 거래처,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축전을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는 행위
 -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에 연고자 추천서를 비치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작성·제출하게 하는 행위
 - 당원집회,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 추천서 서식을 비치·배부하여 직접 또는 행사 보조요원이 대신 작성·제출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현직 및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 선전구호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배부하는 행위
 -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작성하는 행위
-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서명운동 홍보인쇄물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 및 호별로 광범위하게 배부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 ☒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457 판결)
-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대구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고합33 판결)
- ☒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영상을 선거구민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수차례 상영한 행위(부산고법 2016. 12. 14. 선고 2016노611 판결)
- ☒ 후보자에 대한 홍보 · 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기관지 수십 부를 주택 · 상가 등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광주고법 2008. 12. 5. 선고 2008노127 판결)
- ☒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주간지 2면과 3면을 2만부 가량 복사하여 신문에 끼워 넣어 2만여 가구에 배부한 행위(수원지법 2010. 4. 30. 선고 2010고합117 판결)

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 법규요약

법 §93②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1. 16. ~ 4. 15.)

○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 · 신문 ·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서적광고는 제외)하는 행위는 무방

☞ 별칙조항 : §255②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그 기업체의 명의로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
- 출판사가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자사가 출판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저서의 판매를 위하여 신문, 인터넷 배너광고 또는 키워드 광고의 방법으로 통상적인 서적광고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입후보하려는 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스크린도어 등)에 광고하는 행위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앙간증 · 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
- ☒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 ☒ 출판사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저서에 관한 독후감 이벤트를 선거구민인 학생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행위
→ 독후감 이벤트 광고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의 광고이므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음.
- ☒ 저서광고가 금지된 시기에 출판사 사장이 도서를 광고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과 우호적인 문안 등이 게재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 행위(의정부지법 2012. 9. 7. 선고 2012고합243 판결)

4. 출판기념회 개최

▣ 법규요약

법 §103⑤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1. 16. ~ 4. 15.)
- 금지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벌칙조항 : §256③



-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기념회는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되나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기간에는 개최대상 · 장소를 불문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서적의 표지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여 서적을 출간하거나 판매업자가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개최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 · 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유명인사 및 가수, 연예인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에서 단순히 사회나 행사 진행을 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 · 소개글 또는 저서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으로 상영하는 행위

→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축가를 부른 경우 그들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교통비, 오찬 및 다과를 제공할 수 있음.

현수막 · 포스터 등 게시 범위

- 출판기념회 주최자명 · 일시 · 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개최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출판기념회 개최 ·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를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 · 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서점 등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신간서적 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 · 일시 · 장소 및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 안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행위

초대장 이미지 파일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 · 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 ·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하거나 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 ☒ 서적에 특정지역 개발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게재하여 사실상 선거홍보물화 하는 행위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 보도

법규요약

법 §8의8, §96, §108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20. 4. 9. ~ 4. 15. 18:00)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2.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

-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 ~ 4. 1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 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 ·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 다만,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 · 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여론조사 관련 준수사항

-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 ·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 선정
-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법 제108조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4. 거짓응답 및 착신전환 등 이용 중복응답 금지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5.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다음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20. 4. 15. 18:00)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함.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 법적조항 : §252①②, §256①③, §261②③

사례 예시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법 제5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실시하는 행위
-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참고하기 위하여 또는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적합도 및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직접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공동명의로 실시하는 행위
 - ➔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외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여론조사기관이 법 제108조를 준수하면서 ARS 전화조사와 설문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통상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특정 후보자만의 공약을 대상으로 그 지지도나 선호도 등을 조사하는 행위
- ☒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유력 후보자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 ☒ 여론조사를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통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 또는 내용으로 실시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행위
- ☒ 설문사항에 A의 이름을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A의 인지도를 높이고, “A는 변호사입니다. 전문직능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사항을 넣어 A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설문조사를 한 행위(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 ☒ 후보자 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를 위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2~3차 조사의 경우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설문내용으로 실시한 행위(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897 판결)
- ☒ 착신 전환 후 걸려온 여론조사에 연령대 · 성별을 바꿔가면서 허위로 중복 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정당의 공정한 경선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571 판결)
- ☒ 당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ARS전화가 걸려오면 지지정당에 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한 행위(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354 판결)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❶ 할 수 있는 사례

-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팬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주민 6만여 명에게 여론조사결과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지 아니한 행위(창원지법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34 판결)
-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들로 하여금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고, 조사기관,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각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실시간 공표하는 행위(서울북부지법 2012. 9. 21. 선고 2012고합274 판결)
- ARS 여론조사에서 답변문안을 찬성2개, 반대1개로 구성하여 여론조사응답을 유도하였고, ‘모르겠다’를 무응답으로 ‘보통 정도’를 긍정적 답변으로 평가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보도한 행위(광주고법 2015. 2. 5. 선고 2014노391 판결)
- 응답이 완료된 표본만을 유효한 표본수로 산정하여야 하나, 종도이탈 응답자를 포함하고, 남녀 인구비율 가중치 부여시 국가 인구 통계에 의한 성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일괄처리방식이 아닌 순차적 보정으로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실제보다 지지율 격차를 줄여 발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6도8451 판결)
-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위를 하였음에도 1위가 불출마 선언을 하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증된 지지율 1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대법원 2017. 5. 26. 선고 2017도4598 판결)
-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공표하는 행위(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6. 호별방문 및 서명 · 날인운동

법규요약

법 §106, §107

1. 호별방문의 제한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상시 금지)
-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호별방문 성립조건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별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2. 서명 · 날인운동의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 법칙조항 : §255①

사례 예시

가. 호별방문

할 수 있는 사례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전철역 지하상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행위(서울북부지법 2002. 8. 30. 선고 2002고합308 판결)
-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 내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아파트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아파트관리인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광주지법 2010. 11. 9. 선고 2010고합35 판결)
- 후보자의 아들과 자원봉사자가 선거구 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춘천지법 2012. 7. 5. 선고 2012고합86 판결)
- 예비후보자가 군청, 경찰서 등의 다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각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명함 교부 및 지지호소를 한 행위(대구지법 2014. 5. 19. 선고 2014고합29 판결)

나. 서명 · 날인운동의 금지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학등록금 결제관행의 개선방안을 찾고 앞으로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의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명운동 안내문구가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정당의 명칭 · 로고가 표시된 복장 또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주민의 서명을 받는 행위
 - 다만, 서명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 ·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됨.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연판 등 서명 · 날인을 받거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
- 노조위원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 갑(甲)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명부 양식을 비치하고 생산부 소속 직원 19명에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여 서명을 받은 행위(전주지법 2010. 6. 29. 선고 2010고합68 판결)

7. 의정활동 보고

▣ 법규요약

법 §111

- ◉ 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원
-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1. 16. ~ 4. 15.)
- ◉ 금지행위 :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 보고서(인쇄물, 녹음 ·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송 ·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 · 인사말 (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 일정 고지, 그 밖의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함.
 - ➔ 의정보고서의 발행부수 · 면수 · 규격 또는 제작비용에 관하여 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없음.

☞ 법칙조항 : §256③, §261⑧

▣ 사례 예시

가. 보고주체 · 대상

◉ 할 수 있는 사례

- ☑ 해설자가 단순히 의정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의 의정보고 녹화영상물을 제작 · 배부하는 행위
 - ➔ 다만, 해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거나 지지 · 추천하는 내용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위반

- 의원이 의정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의정보고회장을 떠나는 행위
- 자원봉사자 등이 공개된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 장소에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 비례대표의원이 해당 선거구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역이 포함된 새로운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의원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의정보고 녹화물을 상영하는 행위
- 정당이 기관지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의원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지역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나. 보고기간 · 장소

◉ 할 수 있는 사례

- 카카오톡 · 모바일메신저 · 트위터 ·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상시 전송하는 행위
- 주최자의 허락 하에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 · 집회 · 모임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일반 가정집에서 개최하는 경우 의정보고회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참석을 원하는 선거구민의 출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의원이 거리 · 시장에 행사용 천막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의정보고에 관심이 있어 행사용 천막에 들어온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에 대한 응답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에 그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행위
-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의정보고서를 보여주고 의원으로서의 활동실적을 설명한 행위(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469 판결)
-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 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등 옥외에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다. 작성(내용) · 보고방법

○ 할 수 있는 사례

- ☑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도된 신문 칼럼을 그대로 게재하는 행위
- ☑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제작한 책자 형태의 유인물을 의정보고서로 발송하는 행위
- ☑ 이·미용실, 식당 등에 의정보고서를 비치하여 두고 선거구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거나 가져가도록 하는 행위
- ☑ 의정보고회장에서 배부, 우편배달, 호별 투입, 우편함 투입, 신문삽입 배포, 가두 배포, 현관문에 부착, 공공기관·마을회관·종교시설 등에 비치하는 행위
- ☑ 의정보고회 시 참석자 중 내빈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소개시키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당직자 등을 의례적으로 인사시키는 행위
- ☑ 의원사무소를 방문한 자에게 단순히 의정활동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 ➔ 의정활동 영상의 상영장소와 시간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등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는 경우 당해 의원이 참석하여야 함.
- ☑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의정보고서를 통상의 명함 크기로 작성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재임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의정활동사항으로 보고하는 행위
- ☒ 의정보고서에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행위
- ☒ 임기가 만료될 무렵 의정보고서에 다음 임기에 다루어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배부한 행위(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4490 판결)
- ☒ 의정보고서를 벽보나 현수막 형태로 작성·게시하는 행위
- ☒ 의정보고서를 도로변·점포·골목길 등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 종합유선방송사가 의정보고회 전체내용을 녹화 방영하는 행위
-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영상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행위







제5장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 1. 명함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2. 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
- 3. 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 4. 공개장소 연설 · 대담
- 5. 전화 · 인터넷광고
- 6.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 7.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 8. 투표참여 권유활동

[참고 1] 국회의원선거(지역구 · 비례대표)의 선거운동 방법

[참고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참고 3]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1. 명함 · 선거벽보 · 선거공보

법규요약

법 §60의3, §64, §65, §93①

1. 후보자의 명함

● 배부주체 등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 각각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지정한 1명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게재사항 : 후보자의 성명 · 사진 · 전화번호 ·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 ·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와 달리 호별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부를 금지하는 장소는 없음.

2. 선거벽보

● 게재내용 : 후보자의 사진 · 성명 ·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 경력 ·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 · 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물사진은 제외)

3. 선거공보

● 게재내용

- 앞면에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 선거명 · 선거구명 게재
-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제외)

-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됨.

☞ 법칙조항 : §240①③, §250①, §255②, §256⑤, §261③⑦

사례 예시

가. 후보자의 명함

할 수 있는 사례

- QR코드에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정당 ·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정당로고, 정당명칭, 선거대책기구에서의 직위를 게재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 후보자의 명함이나 선거벽보 귀퉁이에 조그맣게 LOOKEY 마크를 인쇄하여 스마트폰의 LOOKEY APP으로 해당 후보자의 동영상을 자동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다니거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된 1명이 되는 경우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선거구 내 아파트 계단에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대구지법 2012. 8. 9. 선고 2012고합245 판결)
- 명함과 거리현수막에 졸업당시의 학교명이 아니라 변경된 현재의 학교명을 게재하여 배부 · 게시한 행위(대전지법 2014. 12. 4. 선고 2014고합385 판결)

- ☒ 선거기간 중 후보자 본인이 명함을 선거구민의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틈새 사이에 끼워 놓는 행위(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3062 판결)
- ☒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회장 역임과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표기한 명함을 배부한 행위(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15530 판결)

나. 선거벽보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게재하는 행위

법 제64조 제1항 ‘정규학력’이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 각종 학교를 졸업, 중퇴, 수료, 수학하거나 재학 중인 이력만을 말함.

-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에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학교 학력은 게재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선거공보에 명예졸업 사실을 수학기간과 함께 게재[예 : ○○대학교 ○○과 3년 제적(명예졸업)]하는 행위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표기하고 현재의 학교명을 팔호 안에 병기하는 행위
- 선거벽보 등 경력 란에 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게재하는 후보자 사진의 배경으로 새들이 비상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후보자 본인만이 찍힌 다른 사진 2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
- 선거벽보·선거공보에 NFC 칩 부착 및 QR코드 삽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선관위의 통상적인 선거벽보 · 선거공보의 취급 과정에서 NFC 칩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벽보에 후보자가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에 군중이 운집한 배경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 ☒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선거벽보에 경력으로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사실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
- ☒ 선거벽보의 학력란에 폐교된 학교의 학적부를 관리하는 학교명을 학력으로 게재하는 행위(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52 판결)
- ☒ 일부 후보자와의 단일화와 2,000여명의 여론조사결과만을 가지고 '○○도민추대 단일후보'라는 내용으로 선거벽보 등에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5. 3. 13. 선고 2015도 640 판결)

다. 선거공보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관위가 공고한 후보자의 병역사항, 재산세 · 소득세 납부실적,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사실대로 비교하여 게재하는 행위
- ☑ 무소속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보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 및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의 활동사진, 약수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과거 함께 활동한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합성사진을 게재하거나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게재하는 때에는 위반
- ☑ 선거공보에 타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점자가 훈용된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임의로 배부한 행위(서울고법 1995. 12. 29. 선고 95노2832 판결)
- ☒ 선거공보에 유사학력인 ‘○○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 게재한 행위(부산지법 2000. 9. 22. 선고 2000고합544 판결)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란에 배우자의 체납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게재한 행위 (부산지법 2006. 8. 4. 선고 2006고합72 판결)
-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후보자정보 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게재한 행위(대구지법 2014. 8. 22. 선고 2014고합346 판결)
- ☒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죄명만 게재하고 ‘선고형 및 확정일자’를 게재하지 아니하여 군의원 재직 중 범죄를 알 수 있도록 한 행위 (대구지법 2014. 9. 25. 선고 2014고합156 판결)
-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수량을 초과하여 선거공보를 인쇄·제공하는 행위 및 공고수량을 초과한 선거공보를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하여 상가 등에 배부한 행위(광주지법 2014. 12. 5. 선고 2014고합486 판결)
- ☒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 총학생회장’을 역임 했음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학생회장(전)’이라고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350 판결)
- ☒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보증채무’를 제외하고 신고한 행위(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

2. 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

▣ 법규요약

법 §61①, §67 등

1.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 선거대책기구의 간판 · 현판 · 현수막

- 수량 · 규격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 · 게시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 게시할 수 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 · 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있음.

2. 거리게시용 현수막

- 재질 · 규격 : 천으로 제작하되, 10m² 이내
- 게시매수 : 해당 선거구안의 읍 · 면 · 동 수의 2배 이내
- 게시방법
 - 관할 구 · 시 · 군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첨부 · 게시하되, 오 · 훠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첨부 · 게시함.
 - 일정한 장소 · 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 · 네온사인 · 형광 그 밖에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 · 신호기 ·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는 방법,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 법칙조항 : §256③

사례 예시

가.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 선거대책기구의 간판 · 현판 · 현수막

◎ 할 수 있는 사례

- 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해당 간판 등을 비추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 포함)으로 설치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현수막에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부각시키거나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나. 거리게시 현수막

◎ 할 수 있는 사례

- 같은 크기 · 도안 · 내용의 현수막 두장을 앞뒤에서 볼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제작하여 한 장의 현수막처럼 사용하는 행위(1매로 산정)
- 장소를 옮겨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는 없으며, 선거일에는 현수막을 이동 게시할 수 없음.
- 법정수량 이내에서 하나의 읍 · 면 · 동에 2매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밖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현수막을 천이 아닌 비닐이나 다른 재질로 제작하는 행위
-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

3. 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법규요약

법 §68

- 주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 종류 및 규격(금액)

| 종 류 | 규 격 |
|--------------------------|--------------------------------------|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 윗옷(上衣) | 선거사무원 수당 기준금액(3만원) 이내 |
| 마스코트, 표찰 · 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 법칙조항 : §255①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위한 모자 · 티셔츠의 외관 ·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에 정당명,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 · 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 섬유 · 고무류 기타 재질을 이용하여 사람 모양 · 지역 상징물 · 동물 모형으로 만든 마스코트 모형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사무원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정보를 보여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다만, 동영상 표출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나 소품 등을 착용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길이 240cm, 20cm 이내)로 제작 · 사용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LED 홍보판에 동영상을 표출하거나, 통상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벗어난 복합 LED 홍보판을 사용하는 행위
-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벗어난 풍선 형태의 디지털 영상홍보장치를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행위
→ 동영상을 표출하는 때에는 선거법 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에도 위반
-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연설 중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인원에게 불꽃놀이 용품을 나누어 주면서 “불꽃놀이 용품에 불을 붙여서 흔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게 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고합577 판결)
- 무인비행장치(드론, Drone)에 자신의 기호 · 성명 · 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이를 날리는 행위
→ 공중에 띄운 무인비행물체와 연결된끈을 몸에 붙이는 경우에도 불가

4. 공개장소 연설 · 대담

법규요약

법 §79, §102

- 주 체 :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외)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 소장 · 선거사무원 및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 내 용 : 소속 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연설 · 대담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다만,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연설 · 대담을 하는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수량 등
 - 자동차와 확성장치 :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1대 · 1조
 - 녹음기와 녹화기 :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
 - 녹화기 화면규격 : 5m² 이내
-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 등
 - 확성장치는 연설 ·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 · 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곳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음.
- 연설금지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 시설
 - 다만, 공원 · 문화원 · 시장 · 운동장 · 주민회관 · 체육관 · 도로변 · 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
 - 선박 · 정기여객자동차 · 열차 · 전동차 ·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 병원 · 진료소 · 도서관 ·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 연구시설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주의사항

- 다른 후보자의 연설 · 대담과 거리제한은 없으나, 소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후보자의 연설 · 대담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아파트단지에서 연설 · 대담을 하는 경우 그 소유 ·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 · 형사책임 문제는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님.

☞ 법칙조항 : §256③⑤, §261⑧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선거벽보 · 선거공보, 후보자의 사진, 정견 · 정책 · 선전구호 등을 그림(캐리커처 포함)이나 문자의 형태로 게재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녹음기 및 녹화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흥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 · 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할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표지를 붙여야 함.
- 후보자가 참여한 활동내용을 녹화물로 제작하여 방영하는 행위
-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일정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자동 통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위반
- 전문성우의 음성으로 후보자의 공약 · 경력 등을 안내 · 설명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녹음물을 녹음기 · 녹화기를 사용하여 방송하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연설 · 대담자량의 이동중에 연설하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장소에서 전문연예인이 아닌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로고송을 함께 부르거나 로고송에 맞추어 함께 율동을 한 행위(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 할 수 없는 사례

- ☒ 비정규학력을 공개장소 연설 · 대담장소에서 녹화물을 통하여 방영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차량에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는 자가 연설 · 대담장소에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녹화물을 방영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로 확성장치를 녹음기 · 녹화기에 설치하는 행위
→ 연설 · 대담용 차량의 크기나 톤수, 확성장치의 출력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 ☒ 선거일에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표소 옆에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차량을 주차한 행위(서울고법 2010. 12. 30. 선고 2010노3155 판결)
- ☒ 연설 · 대담용 차량에 있던 연설용 계단을 밀치고, 연설용 앰프의 전원을 빼려고 하는 등으로 연설 · 대담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부산지법 2006. 8. 1. 선고 2006고합332 판결)

5. 전화 · 인터넷광고

▣ 법규요약

법 §82의4, §82의7, §109②

1. 전화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 ·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2. 인터넷광고

- 주 체 :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 추천 정당을 말함.)
- 매 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방 법
 -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 · 광고주명 및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 인터넷광고의 형식 · 크기(용량) · 규격은 제한 없음.

☞ 벌칙조항 : §252③, §256③, §261⑥

▣ 사례 예시

가. 전화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자신의 로고송을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선거운동원 및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안녕하십니까? 연기자 ○○○입니다. ☎ ☎ ☎ 후보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등)를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 대기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송화자가 직접 통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 정보를 들려주는 행위
-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가 아닌 장소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 · 증설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나. 인터넷광고

◉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구매하여 키워드검색으로 “○○○ 후보” 검색 시 “○○후보”가 검색되고 그곳을 클릭하였을 때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 ☒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트위터 ·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 ☒ 인터넷뉴스운영자가 그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하단 “후보자”란에 특정 예비 후보자의 명함 앞 · 뒷면을 스캔하여 사진과 약력을 배너로 제작 · 게시하여 선거 운동을 위한 광고를 한 행위(창원지법 2014. 11. 7. 선고 2014고합108 판결)

6.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법규요약

법 §103

○ 선거기간 중 아래 행위는 제한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단합대회 ·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법칙조항 : §256①③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 중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행위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선거기간 중에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기념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이라도 국가기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103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총기탈취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 몽타주 배부 및 주민신고요령 등 홍보를 위하여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 중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및 연탄(쌀)나누기 행사나 시·군 새마을 수련회를 개최하는 행위
- ☒ 한국자유총연맹이 선거기간 중 전국 자유 수호 웅변대회 예선 및 본선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례행사인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 정당의 사무처 유급당직자들이 선거기간 중 선거구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 ☒ 택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기간 중 “현시가 보상대회”를 개최하여 집회 참가자 70여명과 같이 후보자인 현 시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수원지법 2002. 11. 22. 선고 2002고합741 판결)

7.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 법규요약

법 §110②, §250, §251, §256

1. 허위사실공표 금지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주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행위 · 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주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다.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 주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행위를 하거나 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하는 행위

2. 후보자비방 금지

- 주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3. 특정 지역 등 비하 · 모욕 금지

- 주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지행위 :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 모욕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비정규학력을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녹화기를 이용하여 방영하는 행위
- ☒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의 ‘경력’ 또는 ‘약력’란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행위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 ☒ 고등학교졸업학력고사시험에 합격한 후보자가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학력란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이라고만 기재한 행위(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207 판결)

- ▣ ‘○○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생회 부회장, □□대학 무역대학원 원우회장’이라는 정규학력 외 학력을 ‘경력’란에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행위(서울고법 2016. 12. 28. 선고 2016노3474 판결)
- ▣ A의원이 ‘한·미 FTA’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의원이 한·미 FTA에 대하여 찬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연설·대담한 행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423 판결)
- ▣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공보 2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후보자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게재한 행위(서울고법 2011. 2. 18. 선고 2010노3676 판결)
- ▣ 거리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1도1078 판결)
- ▣ 후보자 명함에 ‘○○시펜싱협회 발기인 회장’으로서 ○○시펜싱협회 결성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시펜싱협회 회장(전)’이라고 기재함은 물론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표기한 행위(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15530 판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학생회장(전)’이라고 기재한 행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350 판결)
- ▣ 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행위(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 ▣ ‘○○재단의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인 자가 현수막·명함 등에 ‘○○재단 운영위원’이라고 기재한 행위(부산고법 2016. 9. 28. 선고 2016노267 판결)
- ▣ 청와대 정식비서관으로 9개월 정도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임시비서관에 불과하였던 것처럼 페이스북 및 네이버밴드에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354 판결)

8. 투표참여 권리활동

법규요약

법 §58의2

- 주체 : 누구든지
- 허용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금지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벌칙조항 : §256③, §230①③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의 명의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광고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 권유를 하는 행위
- ☒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참고 1]

국회의원선거(지역구 · 비례대표)의 선거운동 방법

| 구 분 | 선거별 | | 관련 조문 |
|---------------------------|-------------------------|----------|----------|
| | 지역구 | 비례대표 | |
| 선 거 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 ○ | 법 §61 |
| | 선거연락소 | △ | × |
| 선 거 사무원 | 선거사무소 | ○ | 법 §62 |
| | 선거연락소 | △ | × |
| 선거벽보 | ○ | × | 법 §64 |
|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 ○ | ○ | 법 §65 |
| 현수막 | ○ | × | 법 §67 |
| 어깨띠 등 소품 | ○ | ○ | 법 §68 |
| 신문광고 | × | ○ | 법 §69 |
| 방송광고 | × | ○ | 법 §70 |
| 후보자의 방송연설 | ○ | ○ | 법 §71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 ○ | 법 §72 |
|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 ○ | 법 §73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 | 법 §74 |
| 공개장소 연설 · 대담 | ○ | × | 법 §79 |
| 단체의 초청 대담 · 토론회 | 후보자 | ○ | 법 §81 |
| | 대담 · 토론자 | × | × |
| 언론기관 초청 대담 · 토론회 | 후보자 · 대담토론자 | ○ | 법 §82 |
| |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
| 선방위 주관 대담 · 토론회 | ○ | ○ | 법 §82의2 |
| 인터넷광고 | ○ | ○ | 법 §82의7 |
| 선거벽보 등 첨부 자동차 · 선박 | ○ | × | 법 §91 |
| 전화 ·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 법 §82의4 |

※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별도

참고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 구 분 | 주 체 | 내 용 | 시 기 |
|---------------|------------------------|---------------------------|------------------------------------|
| 문자메시지 | 후보자 | 제2장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참조 | 상시 |
| 인터넷홈페이지 | 후보자 | " | 상시 |
| 전자우편 | 후보자 | " | 상시 |
| 어깨띠 · 점퍼 등 소품 | 후보자 등 (법 §68 해당자) | 제5장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참조 | 선거운동기간 중 (2020. 4. 2. ~ 4. 14.) |
| 명함 | 후보자 등 (법 §60의3 해당자) | " | " |

참고 3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기 간 : 선거운동기간(2020. 4. 2. ~ 4. 14.)
- 주 체 : 자원봉사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시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 · 대담을 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송 ·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89조 등에 위반 •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관호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및 도로 · 시장 · 점포 · 다방 ·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의 사무소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하는 행위 •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면서 선거운동(보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손가락 활용 등)을 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 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수에 산입하지 않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호(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의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나 후보자 · 예비후보자가 관할 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 10명 이하)은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후보자 명의를 게재 (○○○후보자 정책특보 △△△)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판결) •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 10명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명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 부탁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게 한 행위(창원지법 1995. 12. 7. 선고 95고합370 판결) • 수십 명이 도로 양측으로 줄을 지어 따라 오게 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이름을 선창하고 선거사무원들이 후창하게 한 행위(대전지법 2012. 6. 13. 선고 2012고합21 판결) • 선거사무원 등 총 20여명이 특정후보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점퍼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사무소 앞부터 특정건물까지 수백 미터 거리를 무리를 지어 행진 한 행위 |

*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



기표소



제6장

선거법상 제한 · 금지사례

제1절 금품 · 음식물 기부행위 등

제2절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제3절 단체의 선거운동 등

제4절 당내경선 및 정당활동

제1절 금품 · 음식물 기부행위 등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법규요약

법 §19, §47의2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 간주규정

- 주체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기간 :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2019. 11. 17. ~ 2020. 6. 14.)
- 행위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 · 시 · 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목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함.),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제공을 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봄.

→ 예외 :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기부, 당비 납부는 무방함.

☞ 법칙조항 : §230⑥

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 피선거권 제한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는 피선거권이 없음.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 ☒ 정당의 비례대표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부터 당선이 가능한 앞 순위의 추천을 약속 받고 수 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행위(서울고법 2013. 5. 10. 선고 2013노1050 판결)
- ☒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자신의 측근을 통해 공천심사위원에게 수 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하고, 같은 정당의 전(前)대표에게 고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 ☒ 공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배우자에게 ○○시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선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고액을 교부한 행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374 판결)

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법규요약

법 §112, §113, §114, §115, §116

1. 기부행위의 개념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상관없으며, ‘기관·단체·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함.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는 사유는 불문함.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됨.

※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 법 제112조② 참조

2. 주체별 제한내용

| 주체 | 제한기간 | 주관적 요건 | 제한 내용 |
|---|--------|-----------------|--|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와 그 배우자(법 §113) | 상시 |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례행위 포함) |
| 정당(당원협의회와 청당준비 위원회 포함)·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법 §114) | 선거기간 전 | 당해 선거에 관하여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 | 선거기간 중 |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 누구든지(법 §115) | 상시 | 선거에 관하여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 누구든지(법 §116) | 상시 | 선거에 관하여 | 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

3.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리 또는 요구할 수 없음.



기부행위 제한 취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균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 벌칙조항 : §257①②④, §261⑨

사례 예시

가. 축·부의금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인 친족의 결혼식 주례 행위는 법 제113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경우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 ·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 · 성명이 게재된 근조 · 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나. 회비 · 현금 · 장학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 친목회 · 항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 각종 사교 ·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 성당 ·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현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법인인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행위
 - 국회의원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부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
- ☑ 종친회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종친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그 종친회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반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초 ·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 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의 근거없이 선거구안에 있는 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 동창회의 정관 ·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2만원을 넣어 현금한 행위(서울고법 1996. 4. 10. 선고 96노350 판결)
- ▣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대구고법 1997. 12. 27. 선고 95노657 판결)
-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기부행위금지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 교통편의 · 식사 · 다과 · 음료 등 제공

❶ 할 수 있는 사례

-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 · 시 · 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 · 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또는 시 · 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 · 면 · 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 · 시 · 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식사류 1만원 이하, 다과류 3천원 이하, 음료 1천원 이하)는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됨(이하 같음.).
- ☑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 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 · 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 · 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 · 장애인돕기 ·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 · 토론회에 참석한 직능 · 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 · 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 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 · 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정당에서 교통편의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물론 회의참석 당원이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그 회의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상응하는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도 교통편의 제공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회계처리절차를 준수하여 정당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 · 당원협의회장 등 제3자가 개인경비로 제공하는 경우 위반
-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 · 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 · 떡 · 김밥 · 음료(주류 제외)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 · 간판개시식 ·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 간부 · 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의 발제자 또는 토론자에게 음식물이나 통상의 사례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 · 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 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3천원 이하 다과류를 말함.)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외)·예비 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현직 국회의원은 10명,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는 10명(이 경우 가족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할 수 없는 사례

-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을 국회에 초청하여 국회를 관람시키고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권역단위로 개최하는 순회경선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대의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지역현안 관련 의견 수렴 차원에서 주민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는 제공 가능
-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구호 · 의연금품 제공

❶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언론기관 ·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 · 구호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 법인을 통하여 소년 · 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 · 성명을 공개하여 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 수용보호시설 · 구호기관 ·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 ·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화환 · 화분 제공

❶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 시설의 개소 · 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 · 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 · 합당대회 · 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 · 화분 ·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반

❷ 할 수 없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 기관 · 단체의 장 이 · 취임식에 화환 · 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물 · 기념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법 제141조 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 · 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 가능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 · 효부 · 모범시민 · 유공자등에게 포상을하거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 · 구두미화원 · 가두신문판매원 ·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 ·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 · 부의금품(화환 · 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 · 설 · 추석 · 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 · 단체 ·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 · 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 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 포함) ·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 · 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 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연말 · 설 · 추석 · 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 ·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 · 수첩 · 탁상일기 · 메모판 등의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 제외)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 · 단체 · 시설에 배부하는 행위
→ 이 경우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 실시행위는 무방
- 공공기관 청사 준공식에서 직 · 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기재된 의례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봉사단체가 함께 경로당 청소봉사를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을 그 봉사단체에서 인화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로당에 전달하거나 경로당이 자발적으로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경로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구내 파출소 준공식에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행위
 - 이 경우 표지석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게재하는 것은 무방

✖ 할 수 없는 사례

- ▣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록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포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하여 기부행위 금지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

사. 상장 · 부상 수여

Q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관계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행사에서 국회의원이 그 지위에 맞는 의례적인 범위의 표창 또는 포상(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의 입상자에게 상장(부상 포함)을 수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내부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모범당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당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 ·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축제 · 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하는 행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

아. 무료민원상담 등

◎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행위
- 2 이상의 구 · 시 · 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 · 시 · 군에 설치한 임시사무소(천막이나 주차된 자동차)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행위
- 변호사 · 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 · 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사무기기 · 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 · 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소와는 별개인 시민사회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행위(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 ☒ 대학교병원 전문의인 입후보예정자가 해당 대학교병원의 '찾아가는 순회무료 진료행사'에 참여하여 무료진료를 하고 현수막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명함을 교부한 행위(부산고법 2016. 9. 28. 선고 2016노521 판결)

3.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 수령 금지

▣ 법규요약

법 §135③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 그 제공의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
→ 다만, 선관위에 선임 ·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법에서 정하는 수당 ·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

☞ 벌칙조항 : §230①

▣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 ☒ 자원봉사자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자장면 등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판결)

- ☒ 선거사무장이 후보자의 연설원고 작성, 정책공약 개발, 사진촬영 등 업무처리 대가 명목으로 선거기획업무를 수주한 광고기획사 운영자로부터 1,250만원을 수령한 행위(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246 판결)
- ☒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원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대전지법 2015. 8. 13. 선고 2015고합184 판결)
- ☒ 정치자금 제공자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에게 회사업무를 하지 않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만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행위(부산고법 2016. 11. 23. 선고 2016노508 판결)

4.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

▣ 법규요약

법 §118

-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
- 대 상 : 선거구민
- 금지행위 :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위하여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 · 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 다만, 법 제79조 제3항의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는 무방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2020. 4. 28.까지)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 · 면 ·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

☞ 법칙조항 : §256⑤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가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의례적인 감사인사를 하는 행위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의 대표자, 국회의원도 가능함.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인사장을 선거구민(매세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감사인사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어깨띠 및 소품을 착용한 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녹음기·녹화기 포함)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일반 선거구민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을 선거일 후 13일을 지나서 계속하여 게시하는 행위
- 선거법 제118조 제5호에 따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1매를 초과하여 게시하는 행위

제2절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법규요약

법 §9

- 주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 단체 포함)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 · 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된 전직 시 · 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법규요약

법 §57의6, §85, §86① 등

1.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주 체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주 체 : 공무원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 간주규정 : 공무원이 소속직원, 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가. 주 체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의장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나. 금지행위

상시 금지 행위

-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2020. 4. 2. ~ 4. 1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3.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 법적조항 : §255①③⑤, §256①③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 · 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 다만, 지지 ·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에 즈음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거나, 시 · 구정에 협조해 준 유관단체장 및 통 · 리 · 반장에게 의례적인 내용 (업적 · 치적 제외)의 퇴임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 교사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재학생 2명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남편이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한 행위(대전지법 2004. 10. 20. 선고 2004고합312 판결)
- ☒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 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008 판결)
- ☒ 공무원이 후보자에게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광주고법 2005. 1. 27. 선고 2004노684 판결)
-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13 판결)
- ☒ 공무원이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 · 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담 · 토론회의 예행 연습을 한 행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 참여,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행위(서울고법 2015. 5. 1. 선고 2015노730 판결)
- ☒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대전고법 2015. 5. 6. 선고 2015노149 판결)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 법규요약

법 §86②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 ~ 4. 15.)

- 금지행위

- 정당의 정강 · 정책과 주의 ·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 선전하는 행위
- 창당대회 · 합당대회 ·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 또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적법한 경선운동은 금지되지 아니함.

- 통 · 리 · 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방

-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허용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 ·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 · 후원 행위

- 특정일 ·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 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 교양강좌 개최 · 후원 행위 또는 주민자치 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 또는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금지

- 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
- 법령 ·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 · 면 · 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별첨조항 : §255①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 · 합당대회 ·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다만,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는 위반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 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 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및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훼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직무상 행위로서 자신에 대한 선전이나 업적홍보 없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제3절 단체의 선거운동 등

1. 단체의 선거운동

법규요약

법 §87, §108의③

- 단체는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법 제59조에 따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목에서 '후보자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지하는 정당·후보자를 함께 공표하여야 함.

☞ 법칙조항 : §255①

사례 예시

가. 지지·반대 후보자 결정·공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공동기구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통상적인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 일반 선거구민을 선거인단 또는 국민 배심원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단체 간 공동기구를 새로이 결성하여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후 자체 홈페이지에 지지 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팝업(Pop-up)을 게시하거나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조치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후보자의 이력과 정책공약 홍보, 지지·선전 등 일체의 행위 없이 단순히 투표를 통해 지지할 후보자를 정하는 행위
-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하여 개최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등 집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토의하고 이를 결정하는 행위
-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단체가 일반선거구민을 단일화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 ☒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 · 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 · 시설물 · 집회 등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
 -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기관지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부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 · 선전 · 반대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위반되는 인쇄물 등에 해당
 - 통상적 · 정기적인 발행주기 · 수량 · 면수 · 배부범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3조 및 제95조에 위반되는 탈법적인 인쇄물 내지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에 해당
- ☒ 단체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인 회원들의 모임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하고 소속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행위

나. 단체의 내부 활동

◎ 할 수 있는 사례

-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 · 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 ☑ 옥내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 반대의 내부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만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 ·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 ☒ 노동조합 사무실에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는 전화 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별도로 전화를 증설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7 판결)

다. 단체의 대외 활동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벽보 · 선거공보에 지지 · 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지원연설, 전화 · 전자우편 ·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하여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건의 · 요구하는 행위
 - 다만,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그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법 제107조 또는 제254조에, 그리고 집회가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될 경우 법 제103조에도 위반되며, 단체가 건의한 공약자료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채택한 사실을 신문광고하는 행위도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 정당 ·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표시물 · 광고물 등을 거리나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 · 차량에 게시하거나 단체회원 등의 옷에 새겨 이를 착용하는 행위
- ☒ 단체가 신문 · 방송광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광고(배너, 텍스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업장내 또는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부산고법 2004. 11. 17. 선고 2004노787 판결)
- ☒ 사전에 일반선거구민에게 지지선언 관련 기자회견 개최사실과 장소를 고지하고 그 장소에 연단 · 확성기를 설치 · 사용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인쇄물 배부, 동영상 상영 등 기자회견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경선캠프측 또는 특정인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선언을 권유 · 유도하는 행위

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할 수 있는 사례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임.

✖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13 판결)
-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그 명의를 나타내어 찬성·반대하는 정당의 명칭을 유추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현수막·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등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마. 기타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 노동조합사무소를 통상의 임차료를 받고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후원회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이 경우 후원회의 모집금품을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수 없음.

☒ 할 수 없는 사례

- ☒ 노동조합의 기구·조직 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행위
-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애드벌룬·상징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행위는 모두 불가
- ☒ 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공약평가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2. 낙천·낙선운동

▣ 법규요약 법 §58, §87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이 되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은 선거운동기간 내여야 하므로 그 행위 시점이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이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선거운동의 방법에 있어서도 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금지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

▣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가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기관지·소식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단체가 낙천 · 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서명운동을 하며, 낙천 · 낙선훈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 · 부착하는 행위
-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낙천 · 낙선훈상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
- ☒ 낙천 · 낙선훈상자 명단을 별도의 인쇄물 · 시설물 · 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낙천 · 낙선훈상자를 공천한 정당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단체가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낙선훈상자 명단 등을 전송하는 행위
- ☒ 낙선훈상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
- ☒ 특정 정당 ·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피켓 · 현수막 · 인쇄물 · 광고 · 집회 · 서명운동 ·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낙선훈동을 하는 행위

3.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 법규요약

법 §87②, §89①

1. 사조직 설치 금지

- 주체 및 기간 : 누구든지 상시 금지
- 금지행위 :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 동우회 · 향우회 · 산악회 ·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2.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 주체 및 기간 : 누구든지 상시 금지
- 금지행위 : 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 후원회 · 연구소 ·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예외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로 함.

☞ 법칙조항 : §255①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 개설행위
-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실 개설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각종 단체 등이 선거와 관련 없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라 하더라도 각종 선전물에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행위는 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홍보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 선거운동기간 중 단체의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그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 ·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단체의 사무소에 별도의 전화·컴퓨터 등을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하게 등산 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행위
 -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반
-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를 선거기간 전에 설치·운영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지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권유하기 위하여 위촉장·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
- 단체 등이 그 구성원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이나 업적을 교육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선거운동 연습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대전지법 1996. 8. 8. 선고 96고합26 판결)
- 비록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공간을 벗어나 별도로 구획된 시설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행위(대전고법 2006. 10. 13. 선고 2006노344 판결)
- 아르바이트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 상근시키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8747 판결)
- 연구소를 설립한 후 300여 명의 후원조직을 만들고,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한 선거 관련 회의 개최, 입당원서 전달, 각종 단체 행사 일정 파악, 후보자가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한 행위(대구지법 2010. 5. 19. 선고 2010고합91 판결)

4.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법규요약

법 §87, §103③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후보자의 팬클럽 포함)은 그 기관 ·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벌칙조항 : §255①, §256③

사례 예시

가. 조직 결성 · 운영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 · 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 팬클럽이 통상의 활동 · 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을 두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한 내부활동을 위하여 연대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를 지원하거나 당헌 · 당규에서 정한 경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후보자를 위하여 팬클럽 · 선거추진위원회 · 후원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홍보 · 선전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부조직(대선기획팀, 온라인홍보팀, 정책홍보팀 등)을 두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 팬클럽이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 · 설치하거나 그 팬클럽 운영경비를 회원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하는 행위
 -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설립된 팬클럽인 경우에도 그 운영경비를 모금하면서 저금통에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팬클럽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거나 모금과정에서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법 제90조, 제254조에 위반
- ☒ 팬클럽의 정관 · 규약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임을 규정하는 행위
-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팬클럽 내부에 경선대책본부 등 경선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행위

나. 온라인(ON-LINE) 활동

◉ 할 수 있는 사례

- ☑ 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통상적인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 · 동정 등을 게시하는 행위
- ☑ 팬클럽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게재하는 행위 제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전자우편 발송 불가

✖ 할 수 없는 사례

- ☒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포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다. 오프라인(OFF-LINE) 활동

➊ 할 수 있는 사례

- ☑ 팬클럽이 축구나 등산에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 ➔ 다만,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87조, 제89조, 제103조, 제115조, 제254조 등에 위반
-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학술·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
 - ➔ 다만, 회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양태에 따라 법 제254조에 위반
-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하는 내용 없이 팬클럽 회원이 피켓·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 다만,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는 위반
- ☑ 팬클럽의 임원 등이 후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팬클럽의 명칭을 게재한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 다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살포(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하는 등 통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 집회 또는 선거 지원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
- ☒ 팬클럽이 출정식·발대식 개최와 관련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동원하거나 일반 선거구민 대상 초청장 발송, 신문광고 게재 및 현수막과 벽보를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 특정 후보자의 당선 · 낙선운동을 하는 팬클럽의 회원들에게 팬클럽이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 ☒ 팬클럽이 그 이름을 밝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 · 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
- ☒ 팬클럽이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 · 현판 ·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팬클럽이 법 제112조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외에 불우이웃 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제4절 당내경선 및 정당활동

1.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



법규요약

법 §57의8

- 요청권자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하 '정당'이라고 함.)
- 요청목적
 -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 모집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
-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를 이동통신사별로 작성하여 관할 선관위로 제출
- 요청기한
 - 1) 당내경선 :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 2) 여론수렴 : 여론수렴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 ☞ 법칙조항 : §256①③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독려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표명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SNS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명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퍼포먼스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법 제59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예비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자동 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자신에 대한 지지 · 호소를 하는 행위
- ☒ 정당이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법 제57조의8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나 또는 가두행진, 시설물 설치 · 게시, 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명하는 행위
- ☒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 권유 · 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 권유 · 유도하는 행위

당내경선 보충해설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간의 서면 합의”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말함.
-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이후에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더라도 법 제5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 정당의 당헌 · 당규나 경선후보자 모두의 서면동의에 따라 가산점 또는 감산점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됨.
-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 사망 ·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아닌 자를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2.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원협의회

▣ 법규요약

법 §61의2, §112②, 「정당법」 §37③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 주 체 : 중앙당, 시 · 도당
- 설치단위 : 구 · 시 · 군(하나의 구 · 시 · 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 설치기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2019. 12. 17. ~ 2020. 5. 15.)
→ 중앙당 또는 시 · 도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 · 변경한 때에는 자체없이 관할선관위에 서면신고
- 당원 중에서 정당선거사무소장 1명을 두어야 하며, 2명 이내의 유급사무 직원을 둘 수 있음.
- 간판 · 현판 · 현수막의 설치수량 및 규격제한은 없으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의 성명 · 사진이나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 및 반대하는 내용 게재 금지

2.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 정당의 간부 · 당원, 선거사무관계자, 가족 · 친지 · 지인 등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 초청 가능
→ 정당선거사무소 외 별도 장소에서 개소식 개최 금지
-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 · 간판개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 · 당원 ·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정당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1명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 제공 가능

3.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 설치 금지

-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 · 시 · 군, 읍 · 면 · 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나, 시 ·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 설치 불가

☞ 벌칙조항 : §256④⑤, §257①②, §261⑦⑧⑨, 「정당법」 §59①

사례 예시

❶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에 두는 소장·회계책임자에게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 회계책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시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명의로 당원집회 개최신고를 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기호 ○번 ◇◇◇당,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❷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사진·당선기원 등 후보자의 흥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정당활동

법규요약

「정당법」§37②

- 주체 : 중앙당, 시·도당
- 시기 : 선거기간개시일 전일 까지(2020. 4. 1.)
- 허용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따른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호별방문 제외)

사례 예시

❶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주요 정책 홍보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정당의 명의로 국회의원 사무실(건물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인 '광역 전철 조기 확정'을 홍보·축하하는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나 국회의원사무실 외벽에 게시하거나 당원협의회가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지역 현안 성사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책홍보차량(현수막, 확성장치, LED, VTR 등 설치 차량)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집회 형태로 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당원협의회장 또는 국회의원의 직·성명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국회의원이 행한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는 행위는 금지
- 정당이 청소년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명예당원('정당법'상 당원이 아니며, 「당헌·당규」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 당의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여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위원회를 두는 행위
 - 다만,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위반
-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 혁신위원회', '당 윤리위원회', '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혜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확성장치 등 홍보시설물(정책홍보차량)을 이용하여 정책홍보 연설을 하는 행위
-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당직자가 자신의 명함에 자신이 직책을 맡고 있는 소속 정당·단체의 명칭 외에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 후보자가 되려는 다른 사람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4. 당원집회

▣ 법규요약

법 §141

1. 당원집회 개최 제한

- 주체 : 중앙당, 시·도당
- 제한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2020. 1. 16. ~ 3. 15.)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3. 16. ~ 4. 15.)에는 개최 불가
- 개최신고 :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

■ 신고대상의 예외

-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 단위 이상 지역 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 단위 이상 지역 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 신고시기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 개최장소 :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 표지게시 : 집회장소의 외부에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를 첨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상기 '신고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당원집회 개최장소에 표지게시 생략 가능
- 유의사항
 - 표지에는 집회명 · 일시 · 장소 · 주최당부명 · 참석대상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 · 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표지는 당해 당원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함.

2. 당원집회 개최 금지

- 주체 : 중앙당, 시 · 도당, 당원협의회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3. 16. ~ 4. 15.)
- 금지행위 : 소속당원의 단합 · 수련 · 연수 · 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당무에 관한 연락 · 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금지되는 당원 집회에 해당하지 않음.

☞ 벌칙조항 : §256④, §261⑧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제한기간 중 >

- 당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당로고 포함)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당원교육용 교재를 녹음 · 녹화테이프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참석당원에게 배부하는 행위
- 소속 당원만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채널(하나TV 등)을 이용하여 당원교육용 영상물을 송출 · 방송하는 행위

-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행사에 필요한 막대풍선·손수건·손깃발 등을 사용하는 행위
- 당원집회의 질서유지·청소 등을 위하여 단순히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조끼 또는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 정당 소속의 봉사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그 명의로 일반봉사단원·지역문화 예술인·지역정당인 등과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그 발대식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봉사단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그 발대식 장소에 대통령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봉사활동 과정에서 기부행위 등 선거법상의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금지기간 중 〉

- 당원집회 금지기간이라도 정당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 로고송과 유니폼을 공모한 후, 응모자 등 제한된 범위 안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부 평가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당원집회 금지기간 중에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제한기간 중 〉

- 당원단합대회에 일반 선거구민과 관할기관장을 참석하게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다리 밑에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행사장소에 게시한 표지 외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표시한 안내·홍보용 현수막·깃발 기타 시설물을 외부에 게시하는 행위
- 당원집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대가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교통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 가수·성악가·공연단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예공연을 하는 행위
- 당원이 아닌 자에게 당원집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실제로 연수나 교육은 시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관광을 시키고 식사 및 교통편의 등 만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811 판결)

〈 금지기간 중 〉

- ▣ 정당이 당원집회 개최금지기간 중에 자연보호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반당원을 모이게 하는 행위
-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선출대회와 별도로 소속 당원들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로 선출된 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이나 공전자 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

▣ 법규요약

법 §138, §138의2, §139, §144, §145

1. 정강 · 정책홍보물의 배부 제한

-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20. 4. 2. ~ 4. 15.)
- 제한내용
 - 종 류 : 책자형 정강 · 정책홍보물 1종
 - 규격 및 면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
 -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 · 성명 · 사진, 경력 · 학력 · 학위 · 상벌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배부 전까지 중앙선관위(정당과)에 2부(전자적 파일 가능)를 제출하여야 함.

2. 정책공약집의 배부 제한

- 주 체 : 정당(중앙당 또는 시 · 도당)
- 시 기 : 언제든지

● 게재내용 등

- 정책공약집은 도서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
- 자당의 정책과 선거공약
 - ➔ 후보자의 기호 · 성명 · 사진 · 학력 · 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앞면에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은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3자가 정책공약집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됨.
-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
 - 대담장소(선거연락소에서 이루어지는 연설 · 대담장소 포함)에서의 판매
 -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정책공약집 제출

- 시 기 : 발간 즉시
- 제출처 : 발간 주체(중앙당 또는 시 · 도당)에 따라 중앙선관위(정당과) 또는 시 · 도선관위
- 수 량 : 2권(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3. 정당기관지의 발행 · 배부 제한

●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20. 4. 2. ~ 4. 15.)

● 발행횟수

- 통상적인 주기에 의하되, 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
- 증보 · 호외 · 임시판도 발행횟수에 포함하며, 배부지역에 따라 게재내용 중 일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봄.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 · 성명 · 사진, 경력 · 학력 · 학위 · 상벌 외에 후보자의 흥보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정당의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 연설 · 대담장소 또는 대담 · 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 · 배부 · 첨부 · 게시 ·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 발행 즉시 중앙선관위(정당과)에 2부(전자적 파일 가능)를 제출하여야 함.

4. 당원모집 등 금지 · 제한

- 금지기간 : 선거기간 중(2020. 4. 2. ~ 4. 15.)
-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 · 도당의 창당 ·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는 무방
 -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장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당원모집 내용의 문구를 게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인사 시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교부하는 것은 위반

5. 당사 등 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 선전물 종류 : 간판 · 현판 · 현수막
-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20. 4. 2. ~ 4. 15.)
- 설치수량 : 제한 없음
- 설치 · 게시장소 : 정당(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 당사의 외벽 또는 옥상
 -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 게시할 수 없음.
 -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법 제61조 제6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 · 현판 · 현수막 설치 가능
- 게재내용 : 구호, 기타 정당의 흥보에 필요한 사항,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의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 · 성명 · 사진 · 경력등(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게재 금지)

→ 정강 · 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중앙당과 시 · 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 · 게시하는 행위는 상시 허용(규칙 제47조의2 제1호)

● 설치방법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 게시 금지

☞ 벌칙조항 : §256④, §261⑧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중앙당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강 · 정책홍보물의 일부 지면(1~2면 정도)을 할애하여 게재내용을 달리하여 작성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의 활동사진이나 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 정책공약집을 출판사에 위탁하여 제작 · 판매하는 행위
 - 정책공약집의 여백을 이용하여 기업 등의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고 통상적인 범위의 광고료를 받아 정당의 부대수입으로 처리하는 행위
 - 정당이 정당기관지 구입을 요청하는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정당기관지에 특정 업체 또는 개인의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그들로부터 통상적인 범위의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만이 게재되어 있는 정당기관지(당보)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일부 지면에 소속 예비후보자들의 각오를 인터뷰한 내용을 게재한 정당기관지를 소속 당원과 종래의 배부대상인 유관기관의 장 등 제한된 범위의 외부인사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다만, 선거기간 중에는 법 제139조를 준수하여 발행 · 배부하여야 함.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법인의 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이나 법인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당기관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그 인터뷰 내용이 기관지에 게재되는 행위
-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사무소에 통상적인 크기의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당원집회 교재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정책공약집에 기업광고 게재 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액수의 광고료를 받는 행위
- 후원회의 사무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년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내용을 국회의원○○○후원회 명의로 함.)



제7장

「정치자금법」상 제한 · 금지사례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2.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정치자금
3. 법인 · 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6. 정치자금 회계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법규요약

「정치자금법」§2, §3

-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및 그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 '사적 경비'란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회비, 개인적인 여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함.
 - '부정한 용도'란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함.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Tip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의 의미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 법칙조항 : 「정치자금법」§45①, §47①, §48

사례 예시

❶ 할 수 있는 사례

- 공직선거 입후보, 정당의 당대표 경선 등 관련 비용,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의를 위한 심의료, 경선기탁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차입하는 행위
 -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 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은 위반
-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소속 보좌관·비서관·비서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이나 사망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소속 보좌직원의 생일에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아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행위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과 후원금 모금 계좌를 게재하는 행위
- 교섭단체를 구성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정치자금 통장에서 교섭단체 운영비를 납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소속 상임위원회의 부처·산하기관·유관기관의 장에게 정치자금으로 취임 축하난(蘭)을 제공하는 행위
 - 동료 국회의원 등의 경조사에 정치자금으로 축·부의금 제공하는 것은 위반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기나 근조기의 제작·배송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정당이 여성 정치인재 육성 및 전문분야 연구를 통한 정책지원능력 강화를 위하여 자당의 여성 유급사무직원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에게 해당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따른 등록금 등의 교육비를 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비로 지원하는 행위

- 여성정치발전비로 소속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 제작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위반(국고보조금을 소속 당원에게 지원하는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에 한함.)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정포럼’ 운영회비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투표지 보전신청,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지대, 증거보전과 재검표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 법원 납부 금액 및 변호사비 등 소송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의 경상보조금)로 소속정당 추천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개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행위
 -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 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30일 경과 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봄.
-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경우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
- 누구든지 당직자경선 기탁금을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행위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다만, 정당 대변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변인 논평과 관련한 언론사와의 손해배상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결과에 불문하고 정치자금으로 지출 가능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정치자금 대여자로부터 차입금을 후원금으로 전환하기로 동의를 받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선거운동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행위
-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개설된 의원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정당의 명의로 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단체에 기부하는 행위
→ 정당의 명의가 아닌 실제 성금을 납부한 자의 명의로 시설 등에 전달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 ▣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정치 자금으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집회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중앙당창당준비 위원회후원회의 후원금을 지출하는 행위
→ 「정당법」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 범위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단체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행위(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2.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정치자금

법규요약

「정치자금법」 §2

○ 적용대상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
·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
-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영목적
· 방법·내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정치활동에 관한 유튜브·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 운영 시 광고·후원금 등 수익활동에 있어서도 「정치자금법」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함.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유형

1. 광고 : 애드센스(Adsense) 등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 수입

- 애드센스(Adsense) 광고 : 유튜버 등 제작자가 광고주가 아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계약하여 영상 전후에 광고주가 제작한 광고를 게재하고
소셜미디어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
- PPL(Product Placement) 광고 : 제작자와 광고주가 계약하여 광고주의
상품·브랜드 등을 노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광고주로부터 직접 광고비를
받는 방식

2. 시청자 후원 : 시청자가 제작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후원금 수입

- 슈퍼챗(유튜브), 별풍선(아프리카TV), 팝콘(팝콘TV), 쿠키(카카오TV), 캐시(팟빵),
스푼(스푼라디오) 등

☞ 법칙조항 : 「정치자금법」 §45①

사례 예시

가. 광고 수익

◎ 할 수 있는 사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 · 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국회의원 · 당대표경선 후보자 등)을 게스트로 초청 · 대담하는 영상을 제작 · 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정당이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애드센스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행위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 · 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광고 없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PPL 방식의 광고를 포함한 영상을 제작 · 게시하고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애드센스와 달리 PPL은 부수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상업광고를 제작하여 정당의 설립 목적 및 본래의 기능과 합치되지 않음.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 · 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정치자금의 ‘부정한 용도의 지출’에 해당(‘정치자금법」§2③)

나. 시청자의 직접 기부

◎ 할 수 있는 사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 · 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국회의원 · 당대표경선 후보자 등)을 게스트로 초청 · 대담하는 영상을 제작 · 게시하면서 슈퍼챗 등으로 시청자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 후원금은 정치인이 아닌 운영·관리자에게 귀속됨을 공지 필요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출연료 외의 금전을 받을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슈퍼챗·별풍선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
 - 유튜브 슈퍼챗을 통하여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에 있어 기업의 수익금 중 일부인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에도 위반될 수 있음.
- ☒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방법·내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

3. 법인 · 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법규요약

「정치자금법」 §31

- 외국인, 국내 · 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법적조항 : 「정치자금법」 §45②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직장에서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급여에서 후원금을 공제하여 그 직원이 지정하는 후원회의 입금계좌에 후원금을 납부하여 주는 행위
- 동창회가 동창회보에 단순히 소속 회원인 후보자의 후원회 연락처와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 다만, 동창회보에 후원회 금품모집의 고지목적 범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자주 게재하거나 후원회지정권자의 성명을 부각시키거나 후보자의 사진 · 학력 · 경력 등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동창회보에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광고하는 행위
- 개인(외국인 아님.)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는 계좌(개인자금)에서 후원금을 입금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동창회나 종교모임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 동창회 임원이 동창회비와 회원들로부터 양출한 돈을 특정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광주지법 2004. 10. 7. 선고 2004고합336 판결)
- ☒ 회사의 이사가 보관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행위(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 ☒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는 기탁금의 일부를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지원받는 행위
- ☒ 단체의 사업을 위해 특정 개인이 단체를 대표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단체의 사업을 관리하는 계좌(단체자금)에서 후원금을 입금하는 행위

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법규요약

「정치자금법」 §32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지방의회 의장 · 부의장 선거와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
 -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국가 · 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별지조항 : 「정치자금법」 §45②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등과 관련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 ☒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위(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판결)
 - ➔ 금전반환이 정상적 금전 대여약정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실제 수수한 금전을 반환하는 등 일정한 경우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었더라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은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함(대법원 2017. 2. 17. 선고 2017도628 판결).
- ☒ 공무원이 직접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법규요약

「정치자금법」 §33

- 누구든지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

☞ 법적조항 : 「정치자금법」 §45②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출신 후보자 ○○○을 후원해 주십시오.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은행 000-000-000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올림’과 같이 후원금기부를 안내하는 행위
→ 다만, 후원금 기부를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를 벗어나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 · 대행하거나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위반
- ☑ 1~2개의 광역시 · 도 및 2~3개의 노동조합 등에 「정치자금법」 제16조에 따라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에 의한 후원금을 모금하는 자를 지정(위원장 교부)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임(3~4명 정도)하는 행위
→ 다만,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 공무원이 기업들로부터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자금을 모금한 행위(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 ○○특송의 부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회장님의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우리회사 □□지점에서 돈을 모았다. 우리 본사도 성의를 보여야 하니 찬조금을 내라”고 말하면서 본사 영업부 직원 백여 명으로부터 합계 ××만원을 교부받아 대표이사에게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서울중앙지법 2006. 11. 1. 선고 2006고단4829 판결)

6. 정치자금 회계

법규요약

「정치자금법」 §36

● 정치자금 수입 · 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를 신고한 후에는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함(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4721 판결).
- 다만,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가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의 관리 · 통제 아래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것은 가능
-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지출의 대상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포괄위임 불가).

● 정치자금의 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 지출하여야 함.

●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 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별첨조항 : 「정치자금법」 §47①, §49②

사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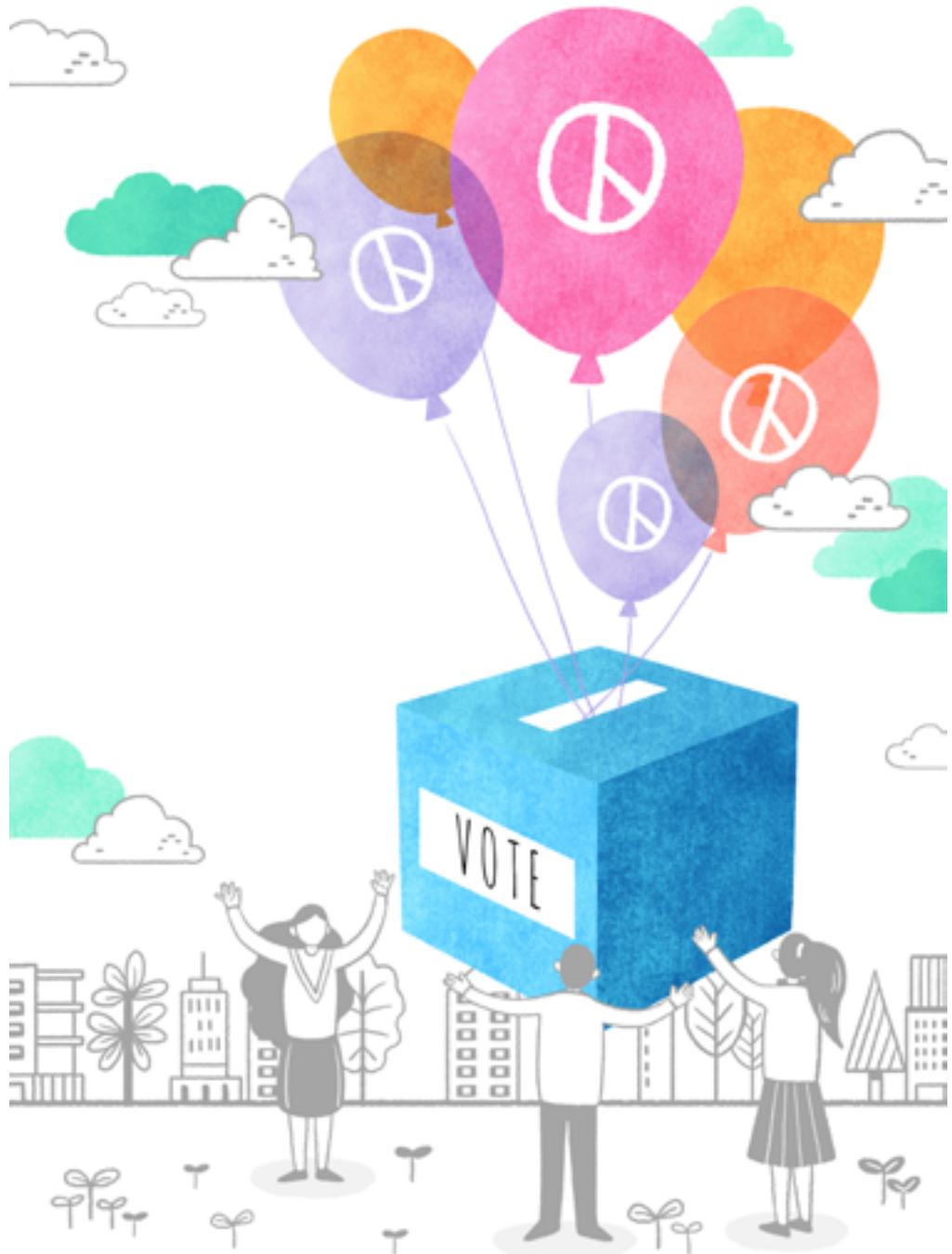
❶ 할 수 있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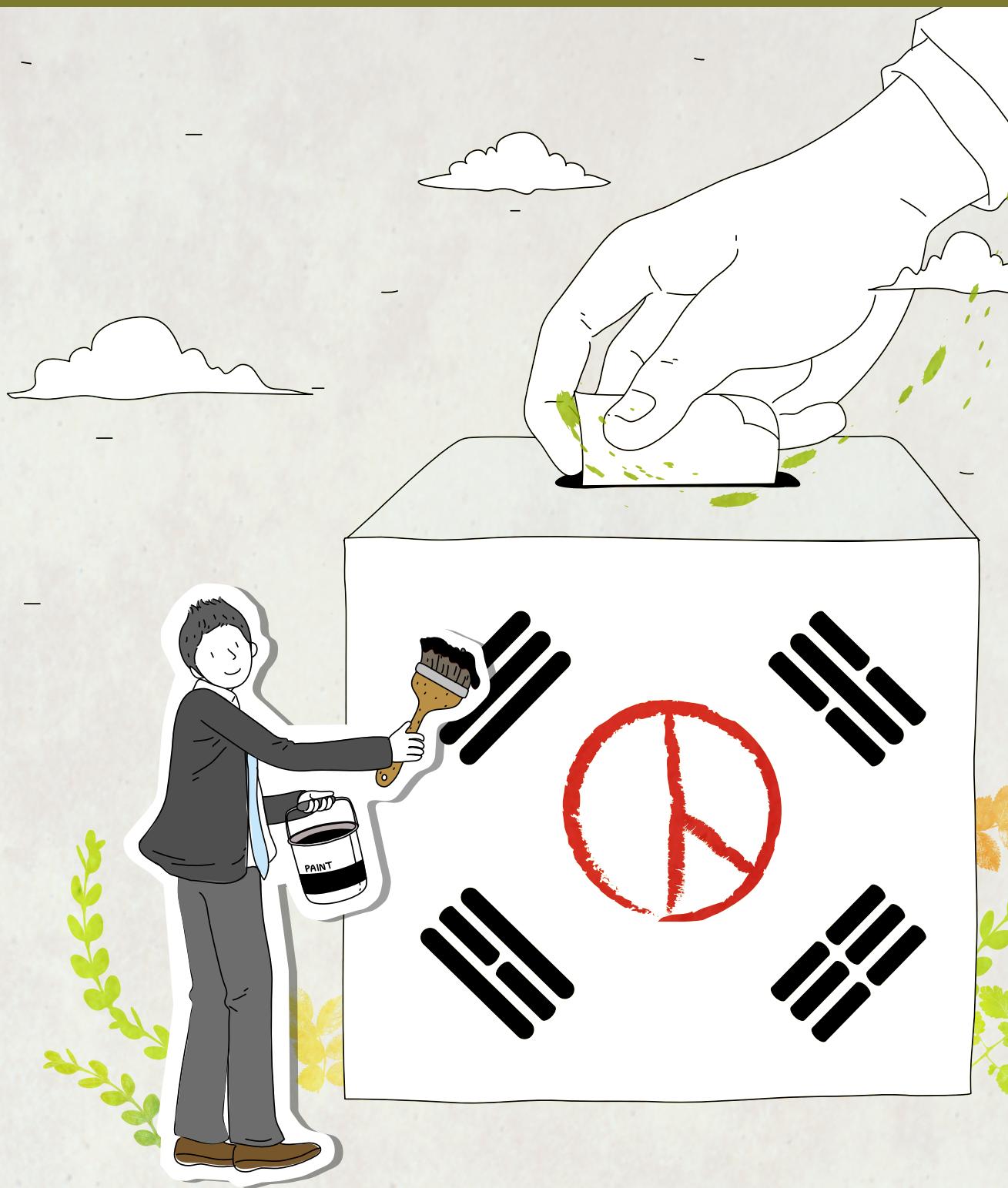
- 회계책임자 선임권자가 회계책임자의 관리 · 통제 아래 정치자금 지출을 위해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 신용카드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 전부터 자동이체(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여부 불문)를 통해 납부해 온 당비를 지출하는 행위
- 회계책임자가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주어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에서 해당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도6937 판결)

- 경선후보자후원회 등록 전에 경선후보자가 경선기탁금을 차입금을 통해 지출하고, 후원회 등록 후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그 차입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후원회를 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후원회 등록 전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여론조사비용을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 실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행위(수원지법 2004. 12. 14. 선고 2004고합 118 판결)
- 회계책임자가 아닌 선거연락소장이 중앙당의 지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수입 · 지출한 행위(전주지법 2005. 5. 2. 선고 2005노257 판결)
-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 된 통장 외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수입 · 지출한 행위(서울고법 2005. 6. 21. 선고 2005노205 판결)







부록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2. 시기별 주요 제한 · 금지사항
3. 금품 ·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4.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5. 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 · 면제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부록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 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준일 | 관계법조 |
|---------------------------------|--------|--|---|--------------------------------|
| '19. 10. 18.부터 '20. 5. 15.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 법§218①, 규§136의2 |
| 11. 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현달 말일) 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 6 규§136의4, 5 |
| 12. 7.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등록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 12. 17.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 1. 16.까지 | 목 수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 전 90일까지 | 법§60② |
| |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 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 : 3.16(월))까지 | 법§53①② |
| 1. 16.부터 4. 15.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 2. 15.까지 | 토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 전 60일까지 | 법§218의5, 6 규§136의4, 5 |
| 2. 15.부터 4. 15.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 2. 26.부터 3. 6.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 9 규§136의8, 9 |
| 3. 16.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 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 3. 24.부터 3. 28.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 법§37, 규§10 |
| |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 법§38, 규§11 |
|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법§65⑤ |
| 3. 26.부터 3. 27.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 4. 1.부터 4. 6.까지 | 수 일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
| 4. 1.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 4. 2.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 4. 3.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 | | 선거벽보 첨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4. 3.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에 | 법§44① |
| 4. 5.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등봉) | 선거일 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 |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등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4. 7.부터 4. 10.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 |
| 4. 10.부터 4. 11.까지 | 금 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 4. 15.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개 표 (투표종료 후 즉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법 제11장 |
| 4. 27.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 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 6. 14.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 후 60일 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 부록 2

시기별 주요 제한 · 금지사항

1 상시 제한(언제든지)

기부행위의 제한

- 야유회 · 관광 · 체육대회 · 등산대회 등의 행사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법 §112)
- 축 · 부의금품 등의 제한(법 §112)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법 §113)

공적지위 관련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9)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5①)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법 §85②~④)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①, 2, 3)

단체활동 관련

-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법 §87①)
- 선거운동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 금지(법 §87②)
- 후보자를 위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법 §89①)

언론활동 관련

- 신문 ·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법 §95)
- 허위논평 · 보도 등 금지(법 §96)

기타 상시제한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법 §91)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법 §106①)
-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 · 날인 받는 행위 금지(법 §107)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신고(법 §108③)
- 특정 지역 · 사람 및 성별 비하 · 모욕 행위 금지(법 §110)
-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법 §230)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 교란 행위 금지(법 §244)
- 허위사실 공표 금지(법 §250)
-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금지(법 §251)
- 사전선거운동 금지(법 §254②)

2 특정 시기 제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9. 10. 18. ~ 2020. 4. 15.)

- 정당 · 후보자가 설립 · 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법 §89②)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법 §90)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법 §93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9. 12. 17. ~ 2020. 4. 15.)

- 창당 · 합당 · 개편 · 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법 §140)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1. 16. ~ 4. 15.)

- 정당 ·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기타 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법 §93②)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법 §103⑤)
- 국회의원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111)
- 정강 · 정책의 신문광고 등 제한(법 §137)
- 후보자의 방송출연 금지(「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2. 15. ~ 4. 15.)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정당 ·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법 §108②)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3. 16. ~ 4. 15.)

- 당원집회 · 당원교육 등 금지(법 §141)

선거기간 중 (2020. 4. 2. ~ 4. 15.)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①⑤, 6, 7)
- 저술 · 연예 ·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92)
- 국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법 §99)
- 녹음기 · 녹화기 등의 사용금지(법 §100)
- 타연설회 등의 금지(법 §101)
- 야간연설 등(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의 제한(법 §102)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제한(법 §103②③④)
- 입당권유, 공개장소 연설 · 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법 §106①③)
- 정강 · 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 · 배부 제한(법 §138, §139)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제한(법 §144①)
- 당사계시 선전물 등의 제한(법 §145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2020. 4. 9. ~ 4. 15. 18:00)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 · 인용보도 금지(법 §108①)

선거일 (2020. 4. 15.)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금지(법 §254①)
-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법 §167②, §241①)

3 선거일 후 제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법 §118)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 · 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 법 §79③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2020. 4. 16. ~ 4. 28.) 읍 · 면 ·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부록 3

금품 ·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규요약(법 §261⑨)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됨.

2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및 양태 | 부과 기준액 |
|--|--------------|
| 1.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금전 · 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 · 권유 · 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 · 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 · 집회 및 행사를 주관 · 주최 하는 행위 다. 금전 · 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 · 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1조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 ·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
| 3.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가 행해지는 모임 · 집회 및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하였다가 현장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20배 |
| 4.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을 제공받거나 법 제261조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 · 물품 등을 우편 · 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자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금품 ·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 · 장소 · 방법 · 상황 등을 자세하게 알린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

3

사례 예시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단체로부터 총 1,348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17명 → 총 11,420만원[1명당 36만원] 과태료 부과
-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총 354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고속버스회사 직원 및 초등학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민 78명 → 총 8,132만원 [1명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후 지방의원으로부터 2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1명 → 총 6,388만원[1명당 105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원씩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명 → 총 6,000만원[1명당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280만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 → 총 3,140만원[1명당 136만원] 과태료 부과
-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개당 4만원 끽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 → 총 2,960만원[1명당 23만원] 과태료 부과
-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장아찌 세트 18천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 → 총 5,229만원[1명당 17.8만원] 과태료 부과
-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대가로 총 149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 → 총 2,957만원[1명당 128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3자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받은 대학생 37명 → 총 2,055만원[1명당 56만원] 과태료 부과

▣ 부록 4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1 법규요약(법 §262의2, §262의3)

-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함.
 - ➔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만 해당됨.)이 있는 경우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거범죄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2 사례 예시

■ 포상금 3억원 지급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심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현금을 전달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2억원 지급

기업대표가 국회의원후보자에게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6,000만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억 5천만원 지급

노동조합이 노조자금으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등에게 선거경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억 2천만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900여 만원 지급 및 당선 시 보좌관 직 제공을 약속하고, 자원봉사자는 예비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액 중 550만원을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억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동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조건으로 선거준비에 소요된 비용과 향후 인사권 등 군수 권한의 1/3을 주기로 약속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8,000만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조직책에게 선거운동 조직 구성 및 활동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7,430만원 지급**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조직을 결성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8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5,500만원 지급**

예비후보자 · 배우자 · 자원봉사자 등이 공모하여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 선거구민 3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5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5,000만원 지급**

- 후보자의 측근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5명에게 구전홍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한 자원봉사자 6인에게 총 1,22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후보자가 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당원관리 및 조직관리 명목으로 현금 3,1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후보자가 읍 · 면책임자 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제출하면서 신고

▣ 부록 5

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 · 면제

법규요약(법 §262)

● 적용대상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 · 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 · 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 · 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 · 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 특례 대상자가 아닌 사람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 수사기관에 통보 시 자수 시기에 관한 규정

- 선관위(읍·면·동선관위 제외. 이하 같음.)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관위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봄.

▣ 부록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16)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 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있음.

| 선거법 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 법 조항 | 개인정보 항목 |
|------------------------------|------------------|---------------------|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 선거법 제60조의3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정보통신망(전자우편, 전화, 문자)을 통한 선거운동 | 선거법 제59조, 제82조의4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선관위에 신고된 1개 번호로 8회 이하만 가능

2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20)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 정보주체가 수집출처 요구 시 필수 고지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함.

- 수집 출처가 기관 · 단체 등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칭까지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 다만, 수집 출처가 특정 개인이고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창회 명부”, “○○동호회 회원명단”등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답변할 수 있음.

* 막연히 지인, 당원 등으로 답변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볼 수 없음.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출처고지 요구에 대비하여 수집 단계부터 수집 출처별로 구분·범주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위반사례 예시] 선거사무소가 전화번호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요구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등을 즉시 알려야 함.
 - 따라서, 전화번호 수집 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잘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포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21)

-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에는 기 수집된 개인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없이 파기해야 함.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4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요청 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35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자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다만,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삭제 등을 거부할 수 있음.
-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제36조 제1항 단서, 제37조 제2항 각 호

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29)

-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개인정보를 PC에 보관 시 각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 필요
-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6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책임자 공개

-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개인정보보호법」§30).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참조(www.privacy.go.kr → 알림판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후보자 또는 보좌관)를 지정·공개해야 함(「개인정보보호법」§31).

※ 각 규정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찾아보기



찾아보기

ㄱ

- 개소식 28, 30, 31, 46, 47, 100, 133, 168
- 경력 11, 12, 32, 46, 47, 56, 68, 70, 71, 72, 78, 84, 85, 86, 139, 140, 141, 153
- 경선 53, 54, 55, 56, 84, 85, 95, 101, 113, 115, 121, 127, 128, 131, 132, 147, 148, 151, 158
- 경선운동 113, 115, 127, 128
- 공개장소 연설 77, 78, 79, 85, 89, 91, 108, 109, 121, 141, 165
- 공공의 이익 85, 105, 106
- 공무원의 지위 111
- 공연히 24, 85, 143
- 공표 21, 53, 54, 57, 79, 84, 85, 86, 119, 124, 143, 164, 166
- 광고 24, 42, 45, 48, 49, 51, 80, 81, 87, 88, 108, 121, 124, 129, 134, 142, 143, 150, 151, 153, 165, 166
- 교통편의 99, 100, 101, 129, 130, 138, 139, 167, 168
- 구호 43, 44, 46, 75, 78, 83, 91, 99, 102, 130, 137, 141, 142
- 금품 21, 91, 94, 95, 97, 98, 102, 103, 107, 108, 109, 129, 130, 138, 153, 163, 166, 167, 170
- 기부행위 94, 95, 96, 97, 100, 105, 130, 138, 140, 163, 167
- 90일 16, 48, 49, 50, 51, 63, 136, 162, 165

ㄴ

- 날인 58, 59, 60, 164
- 노동조합 114, 119, 120, 121, 122, 123, 156, 169
- 녹음기 76, 77, 78, 79, 87, 109, 165

ㄷ

- 다과 28, 51, 99, 100, 101, 133
- 단체 10, 14, 15, 17, 20, 21, 23, 24, 36, 43, 45, 46, 53, 54, 55, 59, 70, 77, 82, 83, 84, 87, 89, 95, 96,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10, 111, 112,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36, 138, 143, 147, 149, 152, 153, 154, 155, 162, 163, 165, 168, 172
- 단체의 선거운동 118
- 당내경선 53, 54, 55, 56, 84, 85, 101, 113, 127, 128, 131, 132
- 당비 94, 147, 155, 157
- 당원 14, 15, 28, 35, 43, 44, 46, 55, 60, 94, 96, 99, 100, 104, 105, 106, 109, 113, 115, 116, 117, 126, 127, 128,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1, 142, 147, 148, 149, 165, 166, 170, 172
- 당원집회 14, 43, 46, 104, 134, 136, 137, 138, 139, 143, 165
- 대담 16, 24, 58, 77, 78, 79, 85, 86, 89, 91, 108, 109, 114, 121, 140, 141, 151, 165

| | | | |
|-------|---|-------------|---|
| 동영상 | 11, 13, 21, 23, 24, 51, 69, 75, 76, 114, 121, 123, 131 | 비방 | 24, 25, 29, 51, 79, 84, 85, 132, 143, 164 |
| ▣ | | 180일 | 42, 43, 44, 45, 48, 51, 60, 97, 135, 162, 164 |
| 마스코트 | 42, 75, 104 | 사 | |
| 명함 | 11, 12, 24, 30, 32, 33, 34, 37, 45, 46, 59, 63, 68, 69, 70, 75, 81, 85, 86, 90, 91, 107, 129, 136, 141, 147 | 사전선거운동 | 13, 123, 164 |
| 모욕 | 85, 164 | 사전투표소 | 73, 87 |
| 무소속 | 11, 35, 68, 71, 79 | 사조직 | 124, 127, 163, 170 |
| 문자 | 11, 13, 20, 21, 22, 24, 30, 37, 57, 61, 75, 78, 90, 91, 109, 118, 128, 129, 131, 172 | 산악회 | 101, 118, 124, 126, 127 |
| 문자메시지 | 11, 13, 20, 21, 22, 23, 30, 57, 90, 91, 118, 128, 129, 131, 172 | 상장 | 105, 106 |
| ▣ | | 서명 | 47, 58, 59, 60, 120, 121, 124, 164 |
| 반대 | 10, 24, 43, 45, 57, 87, 95, 113, 119, 120, 121, 122, 123, 124, 133, 134, 135, 141 | 선거공보 | 24, 68, 70, 71, 72, 78, 85, 86, 89, 114, 121, 162 |
| 방송 | 48, 78, 84, 85, 89, 137, 165, 166 | 선거구 안에 있는 자 | 95, 96, 147 |
| 배우자 | 11, 13, 15, 30, 32, 36, 39, 45, 59, 68, 72, 75, 84, 85, 91, 94, 95, 96, 104, 114, 147, 170, 171 | 선거구민 | 11, 12, 24, 29, 30, 33, 44, 46, 47, 48, 49, 51, 52, 54, 56, 58, 60, 61, 62, 63, 69, 70, 72, 78, 79, 91, 95, 96, 97, 98, 101, 102, 105, 107, 108, 109, 112, 114, 115, 119, 120, 121, 124, 125, 126, 129, 130, 132, 136, 137, 138, 140, 141, 142, 147, 149, 166, 168, 170 |
| 법인 | 46, 96, 98, 102, 142, 149, 155 | 선거대책기구 | 16, 69, 73, 74, 115, 117, 123, 125, 126, 141 |
| 보도 | 53, 57, 63, 113, 119, 122, 131, 164, 166 | 선거벽보 | 29, 68, 69, 70, 71, 72, 78, 85, 89, 121, 162 |
| 부상 | 105, 106 | 선거사무관계자 | 21, 28, 47, 96, 100, 107, 109, 133, 158, 162, 164 |

| | | | |
|----------------|--|----------|--|
| 선거사무소 | 28, 29, 30, 31, 36, 39, 44, 46, 47, 51, 73, 74, 80, 81, 89, 91, 96, 100, 109, 114, 115, 117, 122, 123, 125, 126, 133, 134, 147, 148, 168, 170, 173 | 신문 | 45, 47, 48, 49, 53, 63, 84, 85, 88, 89, 108, 114, 121, 129, 164, 165, 166 |
| ○ | | | |
| 선거사무원 | 16, 32, 33, 36, 39, 45, 68, 69, 72, 75, 77, 78, 91, 108 | 어깨띠 | 37, 38, 44, 60, 75, 76, 87, 89, 90, 109, 138 |
| 선거사무장 | 16, 32, 33, 36, 39, 45, 68, 69, 77, 91, 108, 157, 168 | 여론조사 | 53, 54, 55, 56, 57, 71, 113, 131, 132, 158, 164, 165, 166 |
| 선거에 관한 기사 | 45 | 연설원 | 16, 108 |
| 선거연락소 | 28, 73, 74, 77, 81, 89, 91, 100, 109, 115, 117, 122, 123, 125, 140 | 예비후보자 | 11, 13, 15, 20, 21, 23, 24, 28, 29, 30, 32, 33, 35, 36, 37, 38, 39, 47, 51, 55, 57, 59, 68, 89, 91, 101, 105, 114, 125, 128, 132, 142, 147, 148, 157, 162, 169, 170, 172 |
| 선거운동기간 | 13, 14, 32, 33, 45, 59, 80, 81, 90, 91, 109, 118, 123, 125 | 예비후보자홍보물 | 24, 33, 35, 36, 162 |
| 선거운동을 위한 | 10, 63, 75, 122, 125, 128, 141, 164 | 유사기관 | 124, 125, 163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16, 71, 113, 118 | 유튜브 | 24, 150, 151, 152 |
| 선거운동정보 | 20, 21, 23, 24, 25, 75 | 음성 | 13, 21, 78, 97 |
| 선거인단 | 119, 120 | 의례적 | 10, 11, 17, 30, 31, 33, 42, 43, 46, 47, 51, 63, 69, 101, 103, 104, 105, 106, 109, 113, 115, 116, 133, 147 |
| 선거일 | 13, 16, 42, 43, 44, 45, 48, 49, 50, 51, 53, 54, 55, 60, 61, 63, 73, 74, 79, 94, 97, 99, 100, 105, 108, 109, 115, 117, 131, 133, 135, 136, 137, 139, 162, 164, 165, 166 | 의정보고 | 29, 61, 62, 63, 64, 100, 168 |
| 소셜미디어 | 150, 151, 152 | 인지도 | 56, 126 |
| 소품 | 75, 76, 89, 90, 109 | 인터넷 | 11, 13, 21, 22, 23, 24, 46, 48, 49, 50, 51, 61, 80, 81, 87, 89, 90, 91, 105, 106, 113, 114, 118, 121, 122, 123, 124, 128, 129, 131, 138, 157 |
| 수기 | 75 | SNS | 16, 24, 57, 62, 105, 113, 123, 129, 131 |
| 식사 | 91, 99, 100, 101, 139, 170 | 60일 | 53, 55, 89, 94, 100, 115, 117, 162, 165 |

ㅈ

- 자동 동보통신 11, 13, 20, 21, 61, 78, 91, 109, 124, 128, 172
- 자동차 32, 43, 77, 78, 89, 106, 108, 164, 166
- 자원봉사자 29, 47, 59, 62, 63, 76, 78, 91, 107, 109, 125, 169, 170
- 전자우편 13, 20, 21, 23, 24, 25, 61, 90, 91, 109, 118, 121, 123, 124, 128, 129, 131, 140, 172
- 점퍼 37, 75, 90, 91
- 정강 43, 48, 68, 77, 115, 139, 142, 165
- 정당 10, 14, 15, 16, 17, 24, 28, 29, 30, 35, 36, 39, 42, 43, 44, 45, 46, 48, 51, 53, 54, 55, 56, 59, 60, 62, 68, 69, 71, 75, 77, 78, 79, 80, 83, 85, 87, 88, 91, 94, 95, 96,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8, 109, 110, 112, 114,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3, 124,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6, 147, 148, 149, 151, 155, 156, 164, 165, 166, 170
- 정당기관지 140, 142, 143, 165
- 정당선거사무소 39, 96, 100, 133, 134, 147, 148, 170
- 정책공약집 139, 140, 142, 143
- 정책홍보물 139, 142, 165
- 정치자금 33, 94, 95, 98, 108, 122, 125, 143,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69
- 종친회 82, 98, 118, 127
- 지지 10, 11, 12, 14, 16, 17, 20, 23, 24, 30, 31, 32, 33, 36, 37, 38, 39, 43, 44, 45, 46, 47, 51, 53, 55, 56, 57, 59, 60, 61, 68, 75, 80, 84, 87, 91, 97, 112, 113, 114, 116,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8, 131, 132, 133, 134, 135, 141, 166, 168
- 직계존비속 15, 30, 32, 36, 39, 45, 68, 75, 84, 85, 91, 94, 104, 147, 171
- 집회 10, 12, 14, 42, 43, 46, 61, 62, 63, 82, 83, 104, 116, 119, 120, 121, 124, 127, 129, 130, 134, 135, 136, 137, 138, 139, 141, 143, 149, 165, 167

ㅊ

- 차량 47, 77, 78, 79, 100, 109, 121, 135, 136, 148
- 창당준비위원회 42, 48, 53, 54, 55, 146, 149
- 추천 10, 11, 12, 14, 29, 36, 43, 45, 55, 61, 80, 87, 94, 95, 123, 132, 133, 134, 135, 139, 140, 141, 147, 148, 155
- 추천서 46, 47
- 축 · 부의금품 97, 104, 147, 163
- 축사 17, 30, 51, 61

E

- 통상적인 정당활동 10, 16, 42, 45, 134, 142
투표소 53, 73, 79, 87, 129
투표참여 87, 88, 129
트위터 16, 62, 81

I

- 팬클럽 127, 128, 129, 130
페이스북 62, 81, 86
포스터 49, 51
표찰 42, 75, 87
피선거권 94, 132
피켓 38, 44, 91, 124, 129

H

- 학력 11, 25, 32, 33, 46, 64, 68, 70, 71, 72,
79, 84, 85, 86, 139, 140, 141, 153

- 허위사실 25, 29, 46, 86, 132, 143
허위사실공표 79, 84, 85
현수막 28, 29, 30, 42, 43, 44, 51, 64, 69,
73, 74, 86, 87, 107, 108, 109, 121,
122, 123, 124, 129, 130, 133, 134,
135, 137, 138, 141, 143, 166
현판 28, 29, 43, 73, 74, 100, 130, 133, 141
형제자매 84, 85, 94, 171
호별방문 32, 33, 56, 58, 59, 62, 64, 68,
124, 134, 164, 165
화상 13, 21
확성장치 30, 37, 38, 77, 78, 79, 87, 135,
136, 164
활동보조인 16, 32, 39, 45, 68, 75, 9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발 행 2019년 10월

발 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

편집·인쇄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 비매품 〉

